

의안번호	제90호
의결 년월일	2024. 9. 6. (제322회)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출자	금산군수
제출년월일	2024. 8. 22.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90호
------	------

제출년월일 : 2024. 8. 22.
제 출 자 : 금 산 군 수

1. 제안이유

- 관내 분포하고 있는 야생동물 중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와 및 포획 환경 및 난이도 변화가 지속됨에 따라
- 인삼에 최대 적인 썩을 포함한 포획포상금 책정과 로드킬 구조활동 포상금 책정에 대해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세부책정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7조제1항)
- 로드킬 구조활동 포상금 세부책정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7조제2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고
- 기 타

-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해당없음(기획예산담당관-8556)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담당관-8158)
-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없음(인구교육가족과-24200)
- 입법 예고(2024. 7. 10. ~ 2024. 7. 30.) : 제출의견 없음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산군”을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군수는 군 지역 안에 있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포획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군 지역 안에 있는 부상야생동물 또는 동물 찾길 사고(일명 ‘로드킬’을 말한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조활동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정하며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2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산군”을 각각 “군”으로 한다.

별지 제1, 2, 4, 7, 9호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자원과”를 “환경위생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농업인 등”이란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u>」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 및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의 어업인을 말한다.</p> <p>제12조(피해 보상 대상자) ① 군수는 <u>금산군 관내</u>에서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신체의 상해나 사망의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사람이 피해를 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다. 보상금은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대표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 ----- ----- -----.</p> <p>제12조(피해 보상 대상자) ① ----- ----- <u>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u> ----- ----- ----- ----- ----- ----- -----.</p>

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 5. (생 략)

② (생 략)

제27조(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등) ① 군수는 군 지역 안에 있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포획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은 총포류에 의한 포획의 경우로 한정한다.

1. 멧돼지 1마리당 15만원

2. 고라니 1마리당 6만원

3. 꿩 성체, 비둘기 성체 1마리당 6천원

4. 그 밖의 유해야생동물 1마리당 5천원

② 군수는 군 지역 안에 있는 부상야생동물 또는 동물 찾길 사고(일명 ‘로드킬’을 말한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조활동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등) ① 군수는 군 지역 안에 있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포획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지역 안에 있는 부상야생동물 또는 동물 찾길 사고(일명 ‘로드킬’을 말한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조활동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피해예방 시설	관리번호	설치지역주소
	설치면적(ha)	설치일자
	시설물 종류	

설치금액 (100%)	총 금액 (100%)	원
	지원금액 (60%)	원
	본인부담금(40%)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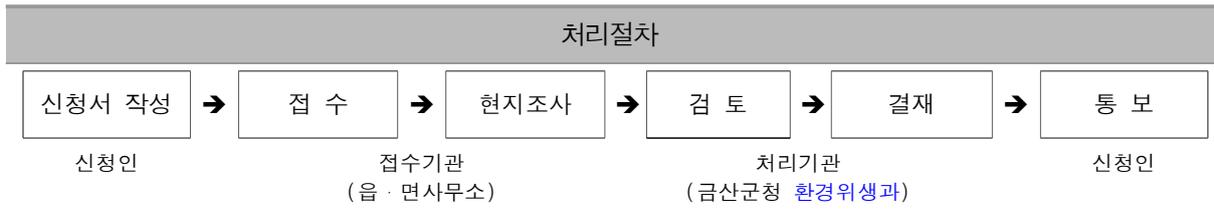
철거 또는 일부훼손 사유	
---------------------	--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림어업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훼손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², 재활용품)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 현황	피해장소	피해일시
	피해부위	가해야생동물
	피해정도	피해금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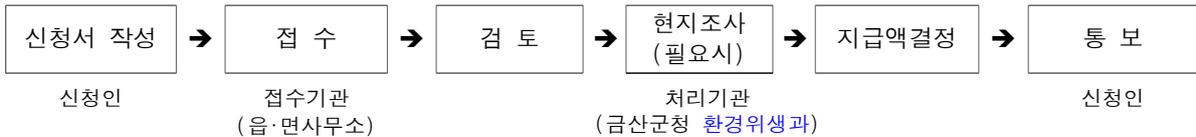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비용추계서 (제4조제2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및 로드킬 사체처리 관련 금액 수시 변동
- 나. 관련 조문 : 안 제27조(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멧돼지 포획포상금 추가지급분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비지원 사업을 통한 재원조달(42,000천원 / 국 21,000천원 도 6,300천원 군 14,700천원)
- 동물 분포, 운반비 증가 등 수시로 변하는 포획 환경을 고려
-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멧돼지 보상금 지급액 200천원 지급 중단 시 500마리 포획기준 최소 1억원 추가 예상됨
- 평 보상금 및 로드킬 처리 비용 상향시 최소 40,000천원 추가 예상됨

[예시] 평 30,000원×500마리=15,000천원

로드킬 50,000원×500마리=25,000천원

나. 추계 결과(산출기초 등)

2023년 반영 / (단위: 천원)

구 분	산출기초	예산액
계		266,200
○ 고라니 포획포상금 지급	50,000원 × 2,600마리	130,000
○ 멧돼지 포획포상금 추가 지급분	100,000원 × 500마리	50,000
○ 비둘기 포획포상금 지급	6,000원 × 7,700마리	46,200
○ 꿩 포획포상금 지급	30,000원 × 500마리	15,000
○ 기타 로드킬 처리 보상금 지급	50,000원 × 500마리	25,000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9%), 도비(2.7%) 군비(88.3%)

3. 작성자

환경위생과장 박 선 용 (☎ 750-249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442,000	266,200	266,200	266,200	266,200	1,506,800	
포획포상금 지급	442,000	266,200	266,200	266,200	266,200	1,506,800	
재원조달	442,000	266,200	266,200	266,200	266,200	1,506,800	
의존 재원	소계	27,300	27,300	27,300	27,300	27,300	136,500
	보조금	27,300	27,300	27,300	27,300	27,300	136,500
	지방 교부세						
자체 수입	소계	414,700	238,900	238,900	238,900	238,900	1,370,300
	군비	414,700	238,900	238,900	238,900	238,900	1,370,3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관 계 법 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울타리·방조망(防鳥網)·경음기(警音器)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피해보상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액 및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기준과 지급금액, 피해액

산정기준과 보상금액 등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